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10. 11 선고 2024가단5916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9. 27.

판결 선고 2024. 10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15,1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. 6. 3.부터 2024. 9. 5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
값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4. 6. 3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
인도시까지 월 9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지은희

별지